

201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일반(남·여) 공채, 전의경 경채 -

2016년 3월 25일

201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신체·체력검사 등 향후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 산 광 역 시 지 방 경 찰 청 장

201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 일반남자 (66명)

(응시번호순)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3	10007	10016	10037	10042	10046	10071	10104	10144	10174
10191	10197	10199	10214	10219	10235	10245	10257	10264	10270
10291	10325	10357	10367	10368	10373	10381	10398	10418	10423
10506	10512	10527	10539	10555	10564	10568	10569	10593	10594
10598	10599	10602	10610	10614	10616	10617	10638	10640	10702
10710	10715	10723	10724	10762	10766	10800	10831	10841	10854
10860	10881	10891	10922	10943	10963	-	-	-	-

이상 66명

● 일반여자 (6명)

(응시번호순)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20009	20024	20032	20037	20159	20196	-	-	-	-

이상 6명

● 전의경경채 (18명)

(응시번호순)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50012	50015	50016	50028	50033	50036	50046	50061	50077	50084
50098	50102	50111	50113	50126	50148	50153	50159	-	-

이상 18명

수험생 유의사항입니다.

-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은 ‘16. 4. 4.(월) ~ 4. 6.(수)까지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과목별 공개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위·변조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게 되고 아울러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필기시험 합격 이후에도 단계별 시험 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아래 붙임 자료 정독하시고 마지막 단계까지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경찰청 교육계(☎052-210-2333)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사전교양 일정 안내
 2. 필기시험 합격자 향후 시험일정 알림
 3. 수험생들의 바람직한 운동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4. 체력검사 기준 및 측정방법 안내
 5. 체력검사 도핑테스트 안내문. 끝.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및 사전교양 일정 안내

○ 사전교양 및 서류제출 일시

응시분야	대상인원	수험번호	제출 일시	비고
남·여·전역경	90명	합격자 전원	'16. 4. 8.(금) 14:00	

※ 서류 제출과 **동시 신체.체력검사** 관련한 사전 교양이 있으니 시간 엄수 참석

○ 사전교양 및 서류 제출 장소 : 울산지방경찰청 1층 강당

○ 주의사항

- 서류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zip」 압축파일을 풀어서 사용
- 제출서류는 **각 페이지** 중앙 최하단에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할 것
(밀봉 서류의 경우는 봉투 세로방향 겹면 중앙 최하단에 기재)
- 모든 제출서류는 A4용지로 하고, **신원진술서는 단면으로 출력** 사용
- 압축파일에 있는 「제출서류 기재부」 순서에 따라 편철할 것
※ **가급적이면 집게를 사용하고 스테플러는 사용 금지**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안내】

상 호	주 소	인터넷 주소	비고
마이크레딧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www.creditbank.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www.allcredit.co.kr	

- ※ 개인 신용정보서 제출시 신용카드 발급을 제외한 내역(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에 대하여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양식 없이 인적사항 및 소명내용을 기록한 후 소명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신용정보조회서는 **요약본이 아닌 기본신용보고서** 혹은 **신용정보통합조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공기록정보, 대출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보증정보, 대출·현금서비스정보, 금융등록정보**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한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 및 수량

수험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제출서류가 생략되거나 간소화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서류 발급시 착오 없기 바랍니다.

① 제출서류 기재부 제출서류.zip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간이약물검사 포함) : 2부

- ▶ 신속한 검사 필요, 종합병원 및 국.공립병원장 발행으로 '人秘' 밀봉상태로 제출
- ▶ 반드시 약물검사필(T.B.P.E), 시력(나안.교정), 청력(db수치) 등이 모두 포함.기재될 수 있도록 신체검사전 병원에 반드시 이야기 할 것(약물검사 결과나 청력수치가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 ▶ 공고일('16.02.17.)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해당 병원에서 ①신체검사서 재발급 받은 후 ②약물검사(TBPE)만 추가로 받아 ①+②함께 제출 가능
- ▶ 채용과정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신원진술서 : 2부 제출서류.zip

- ▶ 반드시 단면으로 인쇄(양면인쇄 아님)하여 2매 자필 작성, 각 반명함판(3*4)사진 부착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각 2부

-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형제.자매까지 기재되도록 호주 명의 발급, 주민번호 공개용으로 발급

④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3부

- ▶ 전문대졸, 대졸자도 필히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⑤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 3부

- ▶ 신용카드 발급을 제외한 대출내역 등이 있는 응시생은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사유를 작성한 소명서(소정 양식 없으며 인적사항과 응시번호 기재) 및 관련자료를 제출
- ▶ 신용정보 제공회사 대표이사(발급기관)의 직인이 인쇄된 것으로 제출할 것

⑥ 병적증명서 : 1부(남자 응시자)

-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⑦ 전투경찰순경복무확인서 : 1부(전역경 경채 응시자만 제출)

- ▶ 전역한 부대 또는 울산지방청 작전의경계에서 발급 가능

⑧ 경찰관서장 표창장·감사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 ▶ 중요범인 검거를 통해 경찰관서장의 상훈을 수상한 경우에 한하며 수상한 일시, 내용 등을 간단히 기술하여 첨부 가능합니다.

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⑩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 : 1부 제출서류.zip

- ▶ 자격증 가산점이 없는 경우에도 0점으로 기재하고 날인후 제출

⑪ 자격증·면허증, 무도단증(2단 이상) 사본 : 각 1부

- ▶ 운전면허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음
- ▶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최장 '15. 4. 29.(금)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⑫ 신원확인조회서(지문대조표) : 1부 제출서류.zip

- ▶ 응시생 본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예비소집일에 지참하면 일괄 채취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향후 시험일정 알림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실외종목은 우천시 일정변경 가능)

○ 시험일정 및 참석대상

구분	일시	장소	참석대상	비고
신체검사 + 체력검사① (실내종목)	16.4.25.(월) 09:00	울산지방경찰청 강당(집결)	▶ 일반남자 : 30명 (응시번호 10003~10423) ▶ 일반여자 : 6명(전원) ▶ 전 의 경 : 18명(전원)	*자체 신체검사 *실내종목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6.4.25.(월) 14:00	울산지방경찰청 강당(집결)	▶ 일반남자 : 36명 (응시번호 10506~10963)	
체력검사② (실외종목) 도핑테스트	16.4.26.(화) 14:00	문수축구경기장 보조경기장	▶ 합격자 90명 전원	*실외종목 100미터 1000미터

○ 준비물

- 공통사항 : 응시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신체검사 : 5부 반바지(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 민소매티
- 체력검사 : 운동복(상의는 입었을 때 늘어나지 않는 흰색 폴티),
운동화(100미터는 스파이크 가능)

적성검사

- 일시장소 : '16. 4. 29.(금) 13:30, 도로교통공단 울산교육장 제2강의실
- 대 상 자 : 신체·체력검사 합격자 전원
-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볼펜 등 필기구

면접시험 : 일정 추후 울산청 홈페이지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의경 경채]

2016. 5. 6.(금) 09:00, 불합격자만 개별 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6. 17.(금) 09:00,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수험생들의 바람직한 운동방법 및 주의사항

1.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 가족 중에 55세 이전에 심장병을 앓은 경우
- 평소 운동중이나 직후 가슴 왼쪽이나 중앙 부위, 왼쪽 목, 어깨, 팔에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낀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경우
- 기절하거나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거나 약간의 힘을 써도 심하게 숨이 차는 경우
- 의사로부터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조절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혈압이 정상인지 모르는 사람
-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던 자
- 관절염과 같은 골 및 관절질환을 진단 받았던 자
- 운동할 때 특별히 주의질환(예: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가진 자

2. 2~3주 동안의 운동방법

- 반복되는 훈련으로 기초체력을 키운다.

사람의 육체는 쓰면 쓸수록 한계점이 아닌 이상, 강화되게 되어 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서 체력은 향상되고, 근력도 좋아지게 된다.

-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면 부상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은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하는 것이 최고로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체력향상, 반복과 함께 한계점까지

장거리 달리기를 할 경우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최대 속력을 내면서 달린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달릴 때 힘들었던 거리를 어느 순간에는 가뿐하게 주파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

일반인들에게는 체계적인 운동과 그에 맞는 영양섭취가 필수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빠른 피로 회복입니다.

피로감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에너지 소모에 의한 피로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몸에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포도당(탄수화물)이다. 운동을 강하게 하거나 무더운 여름날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탈진 및 탈수증상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병원에 가서 '링겔'이라고 하는 포도당 수액을 맞으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3. 심폐지구력 강화운동 방법(1,000m달리기 대비)

-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 운동 강도가 높으므로 최대운동 강도의 50~85% 범위를 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운동적응을 해 나간다.
- 운동시간은 처음 10~20분에서 점차 운동시간과 거리를 늘여 나가 30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운동은 처음에 걷기부터 시작하여 지속걸기가 30분 이상 되면 걷기와 달리기 5~10분을 혼합하여 마지막에는 달리기 위주로 훈련을 한다.(점증부하의 원칙)
- 개인은 체력과 건강수준이 다르므로 개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며 타인과 경쟁하지 않는다.
- 초창기에는 되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트레이닝의 원리에 따라 점증적으로 운동시간과 강도를 늘여나가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처방을 받도록 한다.

4. 운동을 바로 중지해야 하는 경우

- 심장에 통증이 오거나 식은땀이 흐를 경우
- 호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올 때
- 구토증상이 날 때
- 현기증이 나거나 하체에 힘이 빠져 흔들릴 때

체력검사 기준 및 측정방법 안내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별표5-2) -

1. 체력검사(5종목) 기준표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m 달리기(초)	130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이후
	1,000m 달리기(초)	230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 자	100m 달리기(초)	155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이후
	1,000m 달리기(초)	290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방법

■ 100m 달리기

- ① 측정시간은 1/10초 단위로 한다.
- ②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 1,000m 달리기

- ① 타원형 운동장 또는 노상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 ②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 ③ 전자 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 윗몸 일으키기

- ①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각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 ②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 ③ 양 팔꿈치로 양 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④ 전자 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 좌우 악력

- ① 악력기에 의한 기계 측정을 한다
- ②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실시하여 평균을 측정한다.

■ 팔굽혀 펴기

- ①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 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 ②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 ③ 전자 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1분내 실시한 회수를 측정)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구 분	내 용 및 기 준
체 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 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 시 (斜 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수험생 주의사항입니다.

1,000미터 달리기가 실시되는 등 강화된 체력검정 기준으로 평소 실시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면 부상 및 탈진 등 돌발 상황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니, 매일 단계적 반복 훈련으로 기초체력을 키우고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등 사전 충분한 준비로 체력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①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 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2014. 12. 3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지 참조)은 금지됩니다.
- 도핑테스트 관련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제공
※ 원서접수 사이트의 "나의 원서관리>응시표 출력/접수증출력" 메뉴에서 검색 가능

③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④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 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춘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 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 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아울러 도핑 대상자가 체력시험 종료후 도핑검사를 거부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금지약물(24종)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14.12.31), 관보 제18420호 -
원서접수 사이트의 "나의 원서관리>응시표 출력/접수증출력" 메뉴에서 검색 가능

① 동화작용제(7종)

-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6종)

▶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①drostanolone ②methenolone
- ③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④stanozolol
- ⑤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⑥testosterone

*외인성(exogenous) :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 불가능한 약물

*내인성(endogenous) :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 가능한 약물

- 기타 동화작용제(1종)

- ①Clenbuterol

② 이뇨제(3종)

- ①hydrochlorothiazide ②chlorothiazide ③furosemide

③ 흥분제(3종)

- ①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②methylephedrine ③ephedrine

④ 마약류(11종)

- ①Buprenorphine ②dextromoramide ③diamorphine(heroin)
- ④fentanyl 및 유도체 ⑤hydromorphone ⑥methadone
- ⑦morphine ⑧oxycodone ⑨oxymorphone
- ⑩pentazocine ⑪pethidine

⑤ 판정기준

약물군	약물 성분	판정기준	단위
동화작용제	drostanolone	검출 시	
	methenolone	검출 시	
	methasterone	검출 시	
	testosterone	검출 시	
	1-testosterone	검출 시	
	clenbuterol	검출 시	
	stanozolol	검출 시	
이뇨제	hydrochlorothiazide	검출 시	
	chlorothiazide	검출 시	
	furosemide	검출 시	
흥분제	methylhexaneamine	검출 시	
	methylephedrine	> 10	μg/ml
	ephedrine	> 10	μg/ml
마약류	Buprenorphine	검출 시	
	dextromoramide	검출 시	
	diamorphine(heroin)	검출 시	
	fentanyl	검출 시	
	hydromorphone	검출 시	
	methadone	검출 시	
	morphine	검출 시	
	oxycodone	검출 시	
	oxymorphone	검출 시	
	pentazocine	검출 시	
	pethidine	검출 시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 초과만 금지

⑥ 금지방법 : 도핑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